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2020-2021 프리킨더가든/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제출 서류의 종류**

Division of Title I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and Services  
Rocking Horse Road Center, 4910 Macon Road, Room 143, Rockville, Maryland 20852

장애 아동을 포함 프리킨더가든/Head Start 방문 지원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Rocking Horse Road Center(4910 Macon Road, Rockville, Maryland 20852)에서 받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또는 이 양식에 적힌 서류에 관한 질문 또는 특별한 상황 등에 관한 질문은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은 240-740-4530로 전화 또는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montgomeryschoolsmd.org](http://www.montgomeryschoolsmd.org))

**지원서를 작성을 위해서는 아래에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리스트를 지침으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1. 학생의 나이와 신분증명**—다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출생증명서  
여권  
의사가 발급한 증명서  
세례 또는 교회가 발급한 증명서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  
부모 공증된 선서진술서  
출생 등록서, 출생증명서 (한국 출생의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영문판)  
아동의 신분과 출생일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법적 또는 공증된 증명서.

**□ 2. 등록자와 학생과의 관계 증명**—

**사진이 있는 증명의 예**—다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차량관리소(Motor Vehicle Administration)가 발행하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기타 \_\_\_\_\_

**학생과의 관계 증명의 예**—다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학생의 출생증명서  
법정 판결문  
별거 동의 또는 이혼 증명서 또는,  
기타 법적 형태의 증명서 \_\_\_\_\_

**□ 3. 가족의 수입증명(가족의 모든 성인)**—다음 중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당하는 예:**

2019년 세금보고—1040, W2s, Schedule C/1099  
각 직장이 발행한 최근 봉급 지급서/월급 명세서  
고용주의 편지  
아동 부양 법적 판결문 또는 편지  
금액이 적힌 재정 도움 관련 편지  
임시 현금 보조(TCA)  
임대 수입관련 편지  
실직, 장애 수당 등

**□ 4. Montgomery 카운티에서의 현재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집 소유주의 경우—해당하는 서류는 현재 재산세 서류만입니다.

임대하고 있을 경우—해당하는 서류는 현재 임대 계약서(HOC, 해당할 경우, 임대 또는 공과금 보조 포함)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있을 경우, 임대 계약서 사본과 현재 공과금 청구서를 가지고 옵니다

집주인 또는 MCPS 학군에 실제 임대인과 공동 거주하는 경우—

MCPS Form 335-74, Shared Housing Disclosure를 작성하여 공증 후 제출하고, 최근 집주인의 재산세 사본이나 임대 계약서의 사본 (만약 기간이 만료되어 있을 경우는 현재 공과금 청구서)와 함께 아동과 학부모가 이 주소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세 종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리스트는 쪽을 보십시오) 작성 후 서명하고 공증한 MCPS Form 335-74은 제출해야 하는 주소 증명 세 개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5. 본인의 상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

- 학생의 건강보험 카드(해당할 경우)
- WIC 서류철(해당할 경우)
- 식량대체 프로그램(Food Supplement Program-FSP/구 푸드스텐프) (해당할 경우)
- 탁아 서비스 보조 바우처(해당할 경우)
- 아동 탁아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해당할 경우)
- 학생의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후견인/위탁 양육/양육권 증명(해당할 경우)
- 아동 사회보장 카드(소셜시큐리티 카드) (Maryland Children's Health Program(MCHP)에 해당할 경우만 필요)